New Procedures for Employing Foreign Workers in Indonesia P1

TaxFlash



외국인 고용을 위한 신규 절차 및 규정

고용부(Ministry of Manpower)는 외국인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하기의 규정을 신규로 발표하였습니다:

- 규정 No. 10 of 2018 (2018 년 7 월 11 일): 외국인 고용자의 활용;
- Circular Letter No. 3 of 2018 (2018 년 8 월 1 일) : 외국인 고용자 활용을 위한 라이센싱 서비스의 이전, 동 규정은 외국인 고용자의 활용에 대한 대통령령 No. 20 of 2018 의 시행규정으로 제정됨.

대통령령 No. 20 of 2018 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내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work and stay permit 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규정되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고용부 신규 규정 및 Circular Letter 에 따라,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을 위하여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과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신규 신청 절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주요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절차

work and stay permit 신청 절차는 고용부 및 이민국(Immigration)에서 통합하여 사용하는 TK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부분적으로는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OSS 시스템은 2018 년도 정부령 No.24 of 2018 에 의하여 신규로 런칭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신규 신청 절차에 따르면,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주에 승인(일반적으로 IMTA)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동 승인은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 계획 승인(Expatriate Manpower Plan Approval, RPTKA)을 득하는 시점에 "Notification of Foreign Worker"을 고용주가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RPTKA 승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규정에서도 RPTKA 승인 및 Notification of Foreign Worker 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회사의 디렉터 또는 감사(commissioner) 지위를 가지며,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외국인이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지분율(소유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추가적으로 고용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승인서의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발부될 예정입니다.

보험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외국인이 6 개월 이상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근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BPJS 의 National Social Security 프로그램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규 규정에서는 6 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로 외국인이 6 개월 이내로 인도네시아에서 근속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험회사는 글로벌 보험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사업소를 두는 경우 글로벌 보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Tax ID 등록

인도네시아에서 6 개월 이상 근속하는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세무서에서 개인 Tax ID 번호를 발부받아야합니다. 동 요구사항의 준수는 고용부, 이민국 및 관할 세무서에서 긴밀히 정보교환을 통하여 향후에모니터링 될 예정입니다.

4. 복수의 포지션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규정에서도 외국인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a. 외국인이 디렉터 또는 감사로 고용되는 경우(회사의 주주일 필요는 없음); 또는
- b. 외국인이 교육, vocational 트레이닝 섹터, 디지털 이코노미 섹터, 또는 특정 오일 및 가스 섹터에서 근속하는 경우.

5. 프로젝트 계약

고용주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하여 특정 기간 동안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고용자의 계약서와 프로젝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프로젝트 계약서는 work permit 을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되며, 외국인 고용자의 work permit 기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6. 인도네시아어 트레이닝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자를 위하여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트레이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 트레이닝은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work permit 신청의 일시 지연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무사항의 준수와 관련한 증빙을 구비하기 위하여는, 자격이 있는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인도네시아어 트레이닝을 통하여 외국인 고용자가 인도네시아어 트레이닝을 완료하였다는 자격증을 발부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7. 로컬 카운터 파트의 교육 및 트레이닝

고용주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로컬 카운터파트를 외국인 고용자에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자는 반드시 충분한 교육과 트레이닝을 로컬카운터파트에게 제공하여야 하여, 동 사항은 향후에 외국인 고용자를 로컬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고용부는 'on the job'트레이닝을 동 의무사항의 준수의 일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은 로컬 카운트파트가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또는 트레이닝을 받는 옵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8. 비거주 디렉터

기존 규정과 달리, 신규규정은 비거주 디렉터 및 비거주 감사와 관련하여 work permit 을 면제하는 규정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신규규정이 고용주가 반드시 비거자 디렉터 및 비거주 감사에 대하여 RPTKA 와 Notification of Foreign Workers 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비거주 디렉터 또는 비거주 감사가 회사의 업무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 동 외국인에 대하여 RPTKA 및 Notification of Foreign Wokers 의 이행여부를 요청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동 신규 규정과 관련하여 귀사의 비지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PwC 의 Global Mobility 서비스팀 또는 한국데스크(KBD)에 문의부탁드립니다.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박인혁 회계사 (inhyuk.park@id.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Deny Unardi

deny.unardi@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id.pwc.com

Otto Sumarvoto

otto.sumaryoto@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Sujadi Lee

sujadi.lee@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 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 2018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